제341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3. 08. 30.(수)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316
제안일자	2023. 08. 17.
회부일자	2023. 08. 22.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실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김원석 의원 외 19명

2. 제안이유

❍ 걷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질병 예방과 기대수명을 높이는데 효과적이고 안전한 운동으로 걷기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걷기포인트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걷기포인트의 사용 및 제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 걷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8조).

4.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5.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 심사완료(입법정책담당관)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무혁신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감사관)

❍ 해당부서 의견 : 없음(보건정책과)

❍ 예산관련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보건정책과)

6. 입법예고 결과

❍ 예고방법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

❍ 예고기간 : 2023. 08. 22. ~ 08. 28.(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06호)

❍ 의견제출 : 없음

7. 검토의견

□ 제안이유

○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1], 제16조2 및 제16조의3[2]에 따라 도민의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걷기 운동 활

---

1)「**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국민건강증진법」제16조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의 본칙 제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는 “걷기 앱”, “걷기 포인트”, “참여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3조는 걷기 사업의 목표와 추진사업 및 전략, 지역자원 연계방안, 도민 참여 방안과 참여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은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한 것은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이 다른 분야의 도민건강 증진계획에 부합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4조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 ‘교육 및 홍보’, ‘걷기 앱 개발 및 운영’, ‘각종 행사에 걷기사업 연계를 위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 등 걷기사업을 규정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안 제5조는 걷기포인트 지급을 통한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6조는 참여자의 걷기포인트 사용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걷기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7조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한 것으로, 걷기 사업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시군 및 전문성을 가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안 제8조는 안 제4조의 걷기사업을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도민의 걷기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종합의견

❍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역사회건강조사[3]의 ‘2022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에 따르면(붙임자료 1, 2), 광역자치단체 중 2022년 경상북도의 ‘걷기 실천율[4]’은 38.1%로 강원 35.6%, 제주 35.3%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에 있으며, 2022년 경상북도의 비만율[5]은

3) 지역사회건강조사 : 질병관리청이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표본으로 선정된 약 23만명 조사
4) 걷기 실천율 :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분율
5) 비만율 :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BMI, kg/㎡)가 25 이상인 인구의 비율

32.7%로 17개 시도 중 9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뚜벅이 앱('20.11.2. 앱 오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31일 기준 가입자는 7,653명에 이르고 있으나, 개인정보등록 시 지역을 경북으로 선택한 가입자는 1,242명 수준[6] 으로 경북인구 258만 8,860명('23.6.기준) 대비 약 0.0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관리청의 통계 결과와 '뚜벅이 앱' 참여율을 고려해 볼 때, 도민의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걷기 활성화 지원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운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제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뚜벅이 앱 운영 결과보고서('23.7.31.)' 참고

[붙임자료 1]

최근 3년간 시도별 걷기 실천율 추이

(단위: %)

전국	2020	2021	2022
서울	53.1	55.5	62.3
부산	40.7	46.1	52.9
대구	39.1	41.4	43.5
인천	44.8	45.6	54.4
광주	34.3	43.4	48.8
대전	33.3	39.8	53.2
울산	39.6	40.9	48.5
세종	28.8	38.5	50.7
경기	40.6	46.1	49.7
강원	34.7	32.4	35.6
충북	31.9	38.4	45.6
충남	39.5	37.5	44.9
전북	31.7	36.7	46.8
전남	36.7	35.9	44.5
경남	40.8	42.9	44.0
제주	35.1	4.06	35.3
경북	30.6	33.1	38.1 (17개 시도 중 15위)

[자료] 질병관리청(2022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붙임자료 2]

최근 3년간 시도별 비만율(자가보고) 추이

(단위: %)

전국	2020	2021	2022
서울	28.5	29.2	30.2
부산	30.1	29.8	31.2
대구	29.6	29.4	28.8
인천	33.5	34.5	32.6
광주	29.7	31.6	31.0
대전	27.0	29.4	28.5
울산	30.4	31.0	33.4
세종	28.0	27.5	27.7
경기	31.6	31.6	31.9
강원	32.6	34.3	35.0
충북	32.4	31.0	32.9
충남	31.6	32.5	32.9
전북	29.2	32.1	33.4
전남	31.3	32.3	33.8
경남	30.7	31.7	33.2
제주	35.0	36.0	36.5
경북	30.8	32.0	32.7 (17개 시도 중 9위)

[자료] 질병관리청(2022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